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21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 제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함(안 제2조).
- 다. 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인건비계정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며, 세입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름(안 제4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입

- 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
-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마.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은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고, 세입은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세입으로 하되,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며, 그 밖에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함(안 제5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입

- ①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계정 세입을 제외한 금액
-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③ 지역자원시설세의 중 100분의 7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④ 소방 관련 국고보조금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⑤ 법령 및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⑥ 법령 및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으로 함

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2020. 11. 19.~12. 9.)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입.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인건비.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당해 의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안전특별회계 내 소방정책사업비로의 전입비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출의 순증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최태권(02-3706-1321)